

#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http://www.seoul.go.kr)

제 3465호

2018. 5. 17. (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규 칙]

제4216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4

제421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7

제4218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8

제4219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 19

제4220호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40

제4221호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43

제4222호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 45

제4223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 51

제422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3

제4225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53

제4226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69

제4227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73

[입법예고]

제2018-1224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0

제2018-1240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4

제2018-1246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85

제2018-125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6

제2018-1258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7

◆ 고 시

제2018-152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 88

제2018-153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89

제2018-154호 사육신 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07

제2018-155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명칭결정 고시 .....115

제2018-157호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1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5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명칭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1호(2016.09.0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0호(2016.11.10.)로 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8번지 일대 “가칭)동북권 체육공원”에 대한 공식명칭이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 의결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결정되었기에 공원명칭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공원명칭 결정사항

연번	구분	위 치	면적 (㎡)	제정 공원명칭	비고(기존명칭)
1	체육공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8번지 일대	49,830	다락원 체육공원	동북권 체육공원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북권사업단(☎ 02-2133-8440)에 관계서류를 비치 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7호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선총독부고시 제208호(1940.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5-281호(2015.09.17.)로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중구 회현동1가 100-177번지 일대 남산1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남산 회현자락 내 발굴된 조선시대 성곽 유구 등 한양도성 유적을 보존하고 일반인의 관람이 가능하도록 현장유적박물관을 조성함